|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  **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잠행)》에 관한**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47호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확대 시범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시범세수정책 전국으로의 확대실시에 대한 통지》(재세[2013]37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행)》을 제정하여 발포하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체세로의 전환 시범 지역 적용 증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免抵退税)관리방법(잠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파일:  1.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국제운송/홍콩∙마카오∙대만 운송) 면저퇴세신고 명세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  3. 경외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영업대금 수취완료 명세리스트  4. 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명세신청표  5.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의 세금환급(면세) 포기 설명서  국가세무총국  　　2013년 8월 7일  **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잠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경내’)에 증치세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며 증치세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는 단위 및 개인(이하‘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의 과세대상서비스(이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가 일반 계세방법에 포함될 경우에는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실시해야 하며, 상응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범위  (1) 국제운송서비스,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  1. 국제운송서비스  ① 경내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출경(出境)  ② 경외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입경(入境)  ③ 경외에서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경내에서 고객 또는 화물을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로 운반한 경우, 국내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에서 고객 또는 화물을 국내 기타 지역 또는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로 운반한 경우, 국제 운송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  ①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왕복을 제공한 교통운송 서비스  ②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제공한 교통운송 서비스  3.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전세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 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에 종사한 경우, 임대인은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는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또는 신소재 및 그 시스템의 연구 및 실험개발을 진행한 업무 활동을 가리킨다.  설계서비스는 계획, 기획, 발상이 시각적 또는 문자화되어 나타나는 업무 활동을 가리키며, 공업설계, 조형설계, 복장설계, 환경설계, 평면설계, 포장설계, 애니메이션 설계, 전시설계, 웹사이트 설계, 기계설계, 공정설계, 광고설계, 아이디어기획, 문자인쇄청사진 등이 포함된다.  경외부동산에 제공한 설계서비스는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 내 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퇴(면)세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3조** 동 방법에서 지칭하는 증치세 퇴(면)세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면저퇴세방법.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일반 계세방법에 포함될 경우,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상응한 매입세액으로 납부할증치세액(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또는 '선징수 후환급'정책이 적용되는 납부할증치세액 불포함)을 차감하며, 차감 미완료분은 환급하는 방법이다.  (2) 면퇴세방법. 대외무역기업이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하고, 상응하는 외부구입 과세대상서비스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방법이다.  **제4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증치세 환급율은 경내에 제공한 상응하는 서비스에 적용된 증치세 세율이다.  **제5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증치세 퇴(면)세의 계세근거  (1) 면저퇴세 방법을 실시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 계세근거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전체대금이다.  (2) 대외무역이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免退税)계세 근거:  1. 경내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출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제공자가 발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금액.  2.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납부증빙에 기재한 금액.  **제6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퇴(면)세의 계산  (1)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저퇴세는 아래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1. 당기면저퇴세액의 계산:  당기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액 = 당기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 계세 근거 X 외환인민폐환산율 X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환급율  2. 당기 환급할 세액과 당기 면저세액의 계산:  ① 당기기말이월공제세액 ≤ 당기면저퇴세액의 경우,  당기 환급할세액= 당기 기말이월공제세액  당기 면저세액 = 당기 면저퇴세액 - 당기 환급할 세액  ② 당기 기말이월공제새액>당기 면저퇴세액의 경우,  당기 환급할세액 = 당기 면저퇴세액  당기 면저세액 = 0  ‘당기 기말이월공제세액’은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서》의 ‘기말이월공제 세액’이다.  (2) 대외무역기업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퇴세는 아래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대외무역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환급할세액 = 대외무역기업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 계세 근거 X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환급율  (3) 면저퇴세방법을 적용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화물노무(노무란 대외가공수리조립노무를 가리킴, ‘이하상동’)도 수출하는 경우, 현행의 수출화물 면저퇴세 계산공식과 결합하여 일괄 계산한다. 세무기관의 비준 시, 수출화물노무 및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액 비율에 따라 수출화물노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환급액 및 면저세액으로 구분한다.  **제7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처리 전,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출 퇴(면)세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출퇴(면)세자격인증신청표》및 전자데이트를 발급받는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거나 주관세무기관에 의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퇴(면)세자격인증신청표》중의 ‘퇴세 개설은행계좌’는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시,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처리된 은행계좌 중의 하나여야 한다.  (2) 국제운송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아래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본에는 ‘원본과 일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 공장(公章)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하동일’):  1. 국제운송수로에 종사할 경우,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2.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할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항공여객화물우편운송업무’의《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3. 국제육상운송에 종사할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운송’의《도로운송경영허가증》및《국제자동차 운송운행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3)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아래에 열거한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육상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도로운송경영허가증》및《도로운송증》을 소지한 홍콩, 마카오 직통운반차량의 물권(物权)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수로운송방식으로 대만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만해협양안간 수로운송허가증》및 소지한《대만해협양안간선박운용증》선박의 물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수로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제공한 교통운송서비스는 홍콩, 마카오 노선의 경영허가를 득한 선박의 물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 항공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 국내(홍콩포함)항공여객화물우편운송업무’의《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4)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전세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 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를 적용한 임차인은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임차계약서 또는 협의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대외에 제공한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는《기술수출계약서등기증》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수출화물노무를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의 수출 퇴(면)세 자격인증이 미처리된 경우, 상술 자료 이외에 아래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① 비안등기전용 도장이 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②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의 적승인, 수하인이 세관신고한 등기증 원본 및 사본.  (7) 수출퇴(면)세자격인증이 기 처리된 수출기업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하는 경우, 《수출퇴(면)세자격인증변경신청표 》및 전자데이터를 기업하여 동 조 제 (2)항, 제 (3)항, 제(4)항, 제 (5)항의 요구에 부합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자격인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가 수출면(퇴)세자격인증 처리 전 발생한 경우, 수출퇴(면)세자격인증 처리 후, 규정에 따라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주관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수출 퇴(면)세자격인증을 처리 할 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 증치세 퇴(면)세 방법은 수출기업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증치세 및 소비세관리방법>유관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12호)의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먼저 청산하고, 세금을 청산 한 후에야 변경처리가 가능하다.  **제10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상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분기별 증치세 납세신고는 다음분기, ‘이하상동’)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중, 주관세무기관에서 증치세 납세와 퇴(면)세 관련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수입일의 다음달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까지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고,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초과 후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지 않고 퇴(면)세를 신고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더이상 퇴(면)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증치세 면저세퇴 신고 처리 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저퇴세신고집계표》및 그 부속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국제운송/홍콩∙마카오∙대만 운송) 면저퇴세신고 명세표》(첨부파일 1)  3. 당기《증치세 납세 신고표》  4. 면저퇴세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  5. 아래의 원시(原始) 증빙:  ①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선적명세서 및 적재인원명세서(또는 기타 수입의 원시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증표증빙, 또는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은 전자데이터);  ②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세금계산서;  ③ 기간용선, 항해용선 또는 전세방식에 속하는 임차인은 기간용선, 항해용선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협의서 사본 제출;  ④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자료.  상술한 제 ①, ②항 원시증빙은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 보관할 수 있다.  (2) 대외에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증치세 면저퇴세 신고 처리 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저퇴세 신고총괄표》및 부속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파일 2);  3. 당기《증치세 납세신고서》;  4. 면저퇴세 정식신고전자데이터;  5. 다음의 원시증빙:  ①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수입과 대응되는《기술수출계약등기증》복사본;  ②경외단위와 체결한 연구개발 및 설계계약;  ③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세금계산서;  ④《경외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영업대금 수취완료 명세리스트》(첨부파일3);  ⑤연구개발 및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의 수취증빙;  ⑥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3) 영세율과세대상서비스 겸업 대외무역기업이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를 신고 처리할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외무역기업 수출 퇴세 종합신고표》;  2. 《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명세신청표》(첨부파일 4);  3. 외부에서 구매한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취득 전용 세금계산서 상황을 기입한《대외무역기업 수출 퇴세 입하 명세신청표 》.  4. 다음의 원시증빙:  ①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세대상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제출;  ②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세대상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한 납부세액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금납부증명서 제출;  ③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동 조 제(2)항 제 5목에서 나열한 원시증빙서류 .  **제11조** 주관세무기관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의 퇴(면)세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심사결정 한 후,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의문이 생긴 경우, 기업 매입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매입 구성 중 서비스에 속하는 매입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률적으로 교차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수출퇴세 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신고한 기록 중, 아래 몇 가지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가 동 방법 제 2조 규정에 부합한지에 대한 여부;  2. 신고기록 중 과세대상서비스수입이 동 신고기록에 상응하는 적하 또는 승객운송기록에 기재한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 수입보다 작거나 같은지의 여부.  (2) 연구,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신고한 연구, 설계서비스가 동 방법 제 2조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  2. 연구, 설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3. 과세대상서비스를 지불한 측이 연구, 설계서비스를 체결한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4. 신고한 과세대상서비스 수입이 연구, 설계서비스를 체결한 경외단위가 취득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의 여부.  (3)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상술 제 (1), (2)항의 심사 외에, 그 신고한 퇴세 매입세액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와 상응하는지의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4) 세무기관은 기간용선과 항해용선, 전세 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이나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용선과 항해용선, 전세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심사하고, 세금환급을 신고한 기업이 임차인인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  **제12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제 10조 규정에 따라 제출 완료한 퇴(면)세신고 자료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수출 퇴세심사시스템을 거쳐 심사 통과 후, 퇴세 및 면저 국고조정을 처리하며, 퇴세금액은 중앙금고에서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국가수출퇴세를 사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세를 사취한 기업의 수출퇴세 유관문제 처리 중지에 관한 공고》(국세발[2008]32호)규정에 따라 그 수출퇴세권을 중지해야 한다.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수출퇴세기간에 발생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의 처리를 세무기관이 중지한 경우,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4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만일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세금환급 (면세)를 포기하고, 면세를 선택하거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의 세금환급(면세) 포기 설명서》(첨부 5)를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다음달 1일부터 36개월 안에, 해당사가 제공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 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영세율을 적용한 퇴(면)세에 대해 감독 및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68844.files/n12369166.zip>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  **（免）税管理办法（暂行）》**  **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47号  　　为确保营业税改征增值税扩大试点工作顺利实施，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3〕37号）等相关规定，制定了《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暂行）》。现予以发布，自2013年8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地区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免抵退税管理办法（暂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3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零税率应税服务（国际运输/港澳台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  　　2.零税率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免抵退税申报明细表  　　3.向境外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  　　4.外贸企业兼营零税率应税服务明细申报表  　　5.提供零税率应税服务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  　　国家税务总局  　　2013年8月7日  **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  **管理办法（暂行）**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并认定为增值税一般纳税人的单位和个人（以下称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适用增值税零税率的应税服务（以下简称零税率应税服务），如果属于增值税一般计税方法的，实行增值税退（免）税办法，对应的零税率应税服务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第二条** 零税率应税服务的范围  　　（一）国际运输服务、港澳台运输服务  　　1．国际运输服务  　　（1）在境内载运旅客或货物出境；  　　（2）在境外载运旅客或货物入境；  　　（3）在境外载运旅客或货物。  　　从境内载运旅客或货物至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从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载运旅客或货物至国内其他地区或者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不属于国际运输服务。  　　2.港澳台运输服务  　　（1）提供的往返内地与香港、澳门、台湾的交通运输服务；  　　（2）在香港、澳门、台湾提供的交通运输服务。  　　3.采用期租、程租和湿租方式租赁交通运输工具从事国际运输服务和港澳台运输服务的，出租方不适用增值税零税率，由承租方申请适用增值税零税率。  　　（二）向境外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  　　研发服务是指就新技术、新产品、新工艺或者新材料及其系统进行研究与试验开发的业务活动。  　　设计服务是指把计划、规划、设想通过视觉、文字等形式传递出来的业务活动。包括工业设计、造型设计、服装设计、环境设计、平面设计、包装设计、动漫设计、展示设计、网站设计、机械设计、工程设计、广告设计、创意策划、文印晒图等。  　　向境外单位提供的设计服务，不包括对境内不动产提供的设计服务。  　　向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内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不实行增值税退（免）税办法，应按规定征收增值税。  **第三条** 本办法所称增值税退（免）税办法包括：  　　（一）免抵退税办法。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零税率应税服务，如果属于适用增值税一般计税方法的，免征增值税，相应的进项税额抵减应纳增值税额（不包括适用增值税即征即退、先征后退政策的应纳增值税额），未抵减完的部分予以退还。  　　（二）免退税办法。外贸企业兼营的零税率应税服务，免征增值税，其对应的外购应税服务的进项税额予以退还。  **第四条** 零税率应税服务的增值税退税率为其在境内提供对应服务适用的增值税税率。  **第五条** 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  　　（一）实行免抵退税办法的零税率应税服务免抵退税计税依据，为提供零税率应税服务取得的全部价款。  　　（二）外贸企业兼营的零税率应税服务免退税计税依据：  　　1.从境内单位或者个人购进出口零税率应税服务的，为取得提供方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金额。  　　2.从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出口零税率应税服务的，为取得的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缴款凭证上注明的金额。  **第六条** 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退（免）税的计算  　　（一）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免抵退税，依下列公式计算：  　　1.当期免抵退税额的计算：  　　当期零税率应税服务免抵退税额＝当期零税率应税服务免抵退税计税依据×外汇人民币折合率×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退税率  　　2.当期应退税额和当期免抵税额的计算：  　　（1）当期期末留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时，  　　当期应退税额＝当期期末留抵税额  　　当期免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当期应退税额  　　（2）当期期末留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时，  　　当期应退税额＝当期免抵退税额  　　当期免抵税额＝0  　 “当期期末留抵税额”为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的“期末留抵税额”。  　　（二）外贸企业兼营的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免退税，依下列公式计算：  　　外贸企业兼营的零税率应税服务应退税额=外贸企业兼营的零税率应税服务免退税计税依据×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退税率  　　（三）实行免抵退税办法的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如同时有货物劳务（劳务指对外加工修理修配劳务，下同）出口的，可结合现行出口货物免抵退税计算公式一并计算。税务机关在审批时，按照出口货物劳务、零税率应税服务免抵退税额比例划分出口货物劳务、零税率应税服务的退税额和免抵税额。  **第七条**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在申报办理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前，应提供以下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  　　（一）通过出口退（免）税申报系统生成的《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及电子数据。出口退（免）税申报系统可从国家税务总局网站免费下载或由主管税务机关免费提供；  　　《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中的“退税开户银行账号”必须是按规定在办理税务登记时向主管税务机关报备的银行账号之一。  　　（二）从事国际运输服务的，提供以下资料的原件及复印件（复印件上需注明“与原件一致”，并加盖企业公章，下同）：  　　1.从事水路国际运输的，应提供《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  　　2.从事航空国际运输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  　　3.从事陆路国际运输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运输”的《道路运输经营许可证》和《国际汽车运输行车许可证》。  　　（三）从事港澳台运输服务的，提供以下资料的原件及复印件：  　　1.以陆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道路运输经营许可证》及持《道路运输证》的直通港澳运输车辆的物权证明；  　　2.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台湾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台湾海峡两岸间水路运输许可证》及持《台湾海峡两岸间船舶营运证》船舶的物权证明；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获得港澳线路运营许可船舶的物权证明；  　　3.以航空运输方式提供港澳台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国内（含港澳）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  　　（四）采用期租、程租和湿租方式租赁交通运输工具用于国际运输服务和港澳台运输服务的承租方，需提供期租、程租和湿租合同或协议的原件和复印件。  　　（五）从事对外提供研发、设计服务的应提供《技术出口合同登记证》的原件和复印件。  　　（六）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兼营出口货物劳务，未办理过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除提供上述资料外，还应提供以下资料：  　　1.加盖备案登记专用章的《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  　　2.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原件及复印件。  　　（七）已办理过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兼营零税率应税服务的，应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申请表》及电子数据，提供符合本条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要求的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  **第八条**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在营业税改征增值税后提供的零税率应税服务，如发生在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前，在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后，可按规定申报退（免）税。  **第九条** 主管税务机关在办理零税率应税服务出口退（免）税资格认定时，对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原增值税退（免）税办法需进行变更的出口企业，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12号)的规定，先进行退（免）税清算，在结清税款后方可办理变更。  **第十条**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在提供零税率应税服务，并在财务作销售收入次月（按季度进行增值税纳税申报的为次季度，下同）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纳税和退（免）税相关申报。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于收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收齐有关凭证，向主管税务机关如实申报退（免）税。逾期未收齐有关凭证申报退（免）税的，主管税务机关不再受理退（免）税申报，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缴纳增值税。  　　（一）提供国际运输、港澳台运输的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办理增值税免抵退税申报时，应提供下列凭证资料：  　　1.《免抵退税申报汇总表》及其附表；  　　2.《零税率应税服务（国际运输/港澳台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附件1）；  　　3.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  　　4.免抵退税正式申报电子数据；  　　5.下列原始凭证：  　　（1）零税率应税服务的载货、载客舱单（或其他能够反映收入原始构成的单据凭证或经主管税务机关认可的电子数据）；  　　（2）提供零税率应税服务的发票；  　　（3）如属于期租、程租或湿租方式的承租方的，还要提供期租、程租和湿租的合同或协议复印件；  　　（4）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凭证。  　　上述第（1）、（2）项原始凭证，经主管税务机关批准，可留存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备查。  　　（二）对外提供研发、设计服务的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办理增值税免抵退税申报时，应提供下列凭证资料：  　　1.《免抵退税申报汇总表》及其附表；  　　2.《零税率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免抵退税申报明细表》（附件2）；  　　3.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  　　4.免抵退税正式申报电子数据；  　　5.下列原始凭证：  　　（1）与零税率应税服务收入相对应的《技术出口合同登记证》复印件；  　　（2）与境外单位签订的研发、设计合同；  　　（3）提供零税率应税服务的发票；  　　（4）《向境外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附件3）；  　　（5）从与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取得收入的收款凭证；  　　（6）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凭证。  　　（三）外贸企业兼营零税率应税服务的，在办理应税服务免退税申报时，应提供下列凭证和资料：  　　1.《外贸企业出口退税汇总申报表》；  　　2.《外贸企业兼营零税率应税服务明细申报表》（附件4）；  　　3.填列外购对应的应税服务取得增值税专用发票情况的《外贸企业出口退税进货明细申报表》。  　　4.以下原始凭证：  　　（1）从境内单位或者个人购进应税服务出口的，提供应税服务提供方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  　　（2）从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应税服务出口的，提供取得的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缴款凭证；  　　（3）提供研发、设计服务的，提供本条第（二）项第5目所列原始凭证。  **第十一条** 主管税务机关在接受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退（免）税申报后，应在下列内容人工审核无误后，使用出口退税审核系统进行审核。在审核中如有疑问的，可对企业进项增值税专用发票进行发函调查或核查。对进项构成中属于服务的进项有疑问的，一律使用交叉稽核、协查信息审核出口退税。  　　（一）对于提供国际运输、港澳台运输的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主管税务机关可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申报中抽取若干申报记录审核以下内容：  　　1.所申报的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是否符合本办法第二条规定；  　　2.所抽取申报记录申报应税服务收入是否小于或等于该申报记录所对应的载货或载客舱单上记载的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收入。  　　（二）对于提供研发、设计服务的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审核以下内容：  　　1．企业所申报的研发、设计服务是否符合本办法第二条规定；  　　2.研发、设计合同签订的对方是否为境外单位；  　　3.应税服务收入的支付方是否为与之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  　　4.申报应税服务收入是否小于或等于从与之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取得的收款金额。  　　（三）对于外贸企业兼营零税率应税服务的，主管税务机关除按照上述第（一）、（二）项审核外，还应审核其申报退税的进项税额是否与零税率应税服务对应。  　　（四）对采用期租、程租和湿租方式开展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的，主管税务机关要审核期租、程租和湿租的合同或协议，审核申报退税的企业是否为承租方。  **第十二条** 对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按第十条规定提供的凭证资料齐全的退（免）税申报，主管税务机关在经过出口退税审核系统审核通过后，办理退税和免抵调库，退税资金由中央金库统一支付。  **第十三条**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税务机关按《国家税务总局关于停止为骗取出口退税企业办理出口退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8〕32号）规定停止其出口退税权。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在税务机关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期间发生零税率应税服务，不得申报退（免）税，应按规定征收增值税。  **第十四条** 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适用零税率的应税服务，如果放弃适用零税率，选择免税或按规定缴纳增值税的，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提供零税率应税服务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附件5），办理备案手续。自备案次月1日起36个月内，该企业提供的零税率应税服务，不得申报增值税退（免）税。  **第十五条** 主管税务机关应对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适用零税率的退（免）税加强分析监控。  **第十六条** 本办法自2013年8月1日开始执行。  附件下载：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68844.files/n12369166.zip> |